

처분(매각)대상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위치도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처분대상 면 적	추정가액 (개별공시 지가)	처분 시기	처분사유 및 근거법령	매수희망자 주소·성명	처 분 구 분
	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면적						
		합 계		97,308.0	36,249.3	91,326,639				
1	1	소 계		33,058.0	16,529.0	69,646,600				
		대 영등포구	여의도동 23	31,653.0	15,124.0	63,520,800	2000년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	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 입찰	매 각
		대 영등포구	여의도동 23-1	1,405.0	1,405.0	6,125,800	2000년			
2	2	소 계		64,250.0	10,716.0	10,514,707				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37	1,104.0	1,104.0	1,380,000	2000년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	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 입찰	매 각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28	53,950.0	5,045.0	6,306,250	2000년			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30	1,152.0	1,142.0	1,427,500	2000년			
		임 야 용산구	한남동 727-33	2,922.0	1,238.0	481,582	2000년			
		임 야 용산구	한남동 727-34	2,358.0	1,303.0	506,867	2000년			
		임 야 용산구	한남동 727-35	2,436.0	572.0	22,508	2000년			
		대 용산구	한남동 727-38	328.0	312.0	390,000	2000년			
3	3	대 도봉구	창동 1-8	9,004.3	9,004.3	11,165,332	2000년			

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 
번호 717

2000년 11월 일  
교 통 위 원 회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10월 23일,  
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  
회(2000년 11월 7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교통관리실장 차동득)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이유

- '99년말 현재 서울시의 총 부채는 6조 2,865억원으로 그 중 지하철운영기관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4조 8,15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부채의 76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양 공사의 부채는 우리시 부채문제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음.
- 부채상환목적예비비는 2000년도 예산운용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제변동으로 인한 부채상환재원의 추가적인 필요에 대비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부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환조건이 나쁘거나 시급히 조기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 중 장기저리의 공공자금·기금·도시철도공채와 지방공모채, 공사채 등과 같이 채권자가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조기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우선상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
  - 상대적으로 차입금리가 높고 위약금 등 추가부담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금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철도공사의 215억원(한빛은행 9.25%, 2001. 12 만기)과 지하철공사의 700억원(한빛은행 8.95%, 2000. 12 만기)을 우선 상환하고, 잔액 85억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신규차입(4/4분기, 1,597억원) 규모를 축소토록 출자할 계획임.
  - 우리 시에서 지하철 양대공사에 지원한 예산은 납입자본금으로 누적되며, 공사지분은 출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이며, 지원액은 건설부채의 1/2을 시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지하철 부채관리대책에 의거 양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채 규모에서 차감관리토록 하겠음.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
(전문위원 : 김 종 식)
-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예산을 신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예외적으로 인

정하는 제도이나 동 부채상환목적예비비는 본래의 예비비목적과는 다른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

따라서, 감채를 위한 부채상환목적 예산이라면 예비비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편성하거나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- 지하철 양 공사의 고이율 부채를 우선 상환하여 시 전체의 부채 규모를 줄이고 공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할 것이나, 지하철공사의 700억원은 '99. 12월에 차입하여 2000. 12월에 상환해야 하는 악성 단기부채(8.95%)로 이는 당연히 지하철공사에서 다음달인 12월에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채상환자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본래의 부채상환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다 할 것이며 장기 고이율 부채 중에서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이와 같은 원칙대로 매년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출자전환한다면 양 공사에서는 출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단기고리의 악성 부채만을 차입하게 될 것임.

이는 시 전체의 부채규모는 줄일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공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에는 "반"한다고 사료되므로 악성부채 우선상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양 공사의 부채규모, 상환계획, 경영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장기적인 부채상환 및 출자규모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출자하는 것이 책임경영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2001년 예산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 
생략
- 5. 토론요지  
생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 11명, 재석 9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 요지  
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 
없음